

 	<h1>보 도 자 료</h1>	배 포	2020. 11. 27.(금)
		담 당 과	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 관세청 인천세관 조사1관실
과 장		김 솔 (☎043-719-6251) 이근영 (☎032-452-3040)	
사 무 관 팀장		최은주 (☎043-719-6256) 장재수 (☎032-452-3041)	

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·판매 16개 업체 적발·송치

- 식약처에 식품 적합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된 식품용 제빙기 등 113,685점 -

-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(세관장 김윤식)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, 온수기 등 113,685점을 수입('13.9월~'20.7월, 시가 1,139억원)한 16개 업체를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.
-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*으로 국내에 수입·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,
 - 식약처와 관세청에 수입신고한 신고내역 등을 연계 분석하여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.
 - *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함
-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는 판매중지 및 회수·폐기 조치하였고, 해당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.
 - * 회수제품 정보는 '식품안전나라(foodsafetykorea.go.kr)' 홈페이지(회수·판매 중단)에서 확인할 수 있음
-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'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된다'면서

-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하여 무신고로 식품용 기구가 수입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무신고 기구 관련 정보 신속 공유하고 특별 및 정기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용 기구 무신고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‘국번없이 1399’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- *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, ‘내손안(安) 식품안전정보’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